

인구동태표본조사
조사요령서

197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례

一.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근거	3
3. 조사범위 및 대상	3
4. 조사방법	4
5. 조사단위	4
6. 조사시기 및 대상기간	4
7. 조사표의 종류	4
二. 조사상 용어의 정의	5
1. 가구	5
2. 가구원	5
3. 출생	5
4. 사망	6
5. 인구이동	7
	8
三. 조사절차	8
1. 조사용품의 수령	8
2. 실사	8
3. 조사표의 검토 정리 및 제출	11

四. 조사표류 기입요령	13
1. 조사표의 종류	13
2. 조사표류 기입요령	13
가. 가구원 명부보완	13
나. 표본조사표 기입요령	14
1) 출생란	14
2) 사망란	20
3) 이동란	25
다. 조사구별 종합표 기입요령	28
라. 변동보고서 기입요령	30
부 록	31

一.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인구동태표본조사는 조사구내에서 발생하는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관한 인구동태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가.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단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의한 정태인구를 추정하여

나. 국민의 생명표 작성, 사망원인 분석, 간접출산력 측정 및 가족계획실적의 평가자료등 보건위생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다. 기타 경제·사회·후생·교육 등 광범한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근거

본 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제3호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모든 해당가구는 본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

3. 조사범위 및 대상

총 인구의 $\frac{1}{500}$ 에 해당되는 166개 표본조사구(경계활동인구 조사구와 같음)를 그 조사범위로 하며,

동 조사구내에 상주하는 모든 인구의 출생·사망 및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4. 조사방법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입하는 면접식 타계조사방법에 의한다.

5. 조사단위

표본조사구내의 가구를 단위로 한다.

6. 조사시기 및 대상기간

본 조사는 분기별 계속조사로서 매년 지정된 달(2, 5, 8, 11월)의 15 ~ 25일 사이에 조사하고 매분기마다 지난 3개월을 그 조사대상으로 한다.

7. 조사표의 종류

본 조사는 다음의 3가지 조사표를 사용한다.

가. 가구원명부(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음)

나. 표본조사표

다. 종합표

二. 조사상 용어의 정의

본 조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동태사건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특히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한다.

1. 가 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 정의와 같음.

2. 가구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원 정의와 같음.

3. 출 생

가. 출생이란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분리 노출된 현상으로서 모체로부터 분리된 후에 태줄의 절단 또는 태반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호흡, 심장의 고동, 태줄의 진동, 수의근의 명료한 움직임 등 생존하고 있는 증거가 있을 때를 말한다.

나. 출생은 원칙적으로 상주지 개념에 의거 조사되나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수정된 상주지 개념에 의거한다. 즉

- 1) 유아가 조사당시 당해조사구내에 살고 있을 경우는 유아의 출생지 및 어머니의 상주지에 관계없이 동 조사구내에서 조사한다.
예 : 젖은 아기 , 입양아 등
- 2) 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어머니가 현재 살아 있을 경우는 어머니의 상주지에서 조사하고 , 유아 및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는 어머니의 죽기전 상주지에서 조사한다.

4. 사 망

가. 사망이란 출생이후 어느 시기에 있어서 생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영원히 소멸됨을 말한다. 즉 소생능력이 없는 출생후의 생존기능의 정지를 말하며 사산은 제외된다.

나. 사망도 상주개념에 의거 조사하므로 조사구내에서의 상주자의 사망은 물론 상주자가 타지역에 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조사한다.

예 : 친척방문중 , 여행중 , 병원 , 양로원 , 교아원 등

다. 그러므로 조사구내로의 일시적 방문자중 사망자, 군부대내(연외거주자는 제외) , 교도소 등에서 사망한 자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5. 인구이동

일정기간동안에 일어나는 인구의 지역간의 움직임을 말하며 본 조사에서는 담당조사구를 기준으로 하여 일어나는 전입만을 말한다.

따라서 담당조사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한 사건은 조사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지역에서 담당조사구로 이동해 들어온 전입만 조사하면 된다.

三. 조 사 절 차

1. 조사용품의 수령

조사원은 조사에 앞서 중앙에서 배부하는 아래의 조사용품을 수령하여 조사준비에 임한다.

가. 조사표

- 1) 가구원명부
- 2) 표본조사표
- 3) 종합표

나. 변동보고서

다. 조사요령서

라. 연도별 양·음력 환산표

마. 조사용 비품

2. 실 사

조사원은 통계국의 지시와 실사계획에 따라 조사에 임한다.

가. 실사계획

- | | |
|-------------|------------------------------|
| 1) 조사구요도 보완 |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보완
및 기입방법과 같음 |
| 2) 가구원명부 보완 | |
| 3) 변동보고서 기입 | |
| 4) 표본조사표 작성 | |
| 5) 종합표 작성 | |

나. 실사방법

- 1) 조사원은 가구원 명부와 표본조사표 및 연도별 연령환산표를 가지고 조사에 임한다.
- 2) 가구원명부에 의거 지난 분기조사이후의 가구원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가구원 명부를 보완하고 변동사항중 출생, 사망, 전입사건에 대하여만 표본조사표에 기재된 질문 사항대로 조사한다.
- 3) 조사표상의 모든 연월일(출생·사망·전입·기타)은 "연도별 양·음력 환산표"에 의거 반드시 양력으로 환산 기입한다.
- 4) 지난번 분기조사에서 누락되었다가 금번 분기에 출생·사망·전입이 포착되었을 경우에는 이 포착된 누락사건도 모두 금번분기에서 조사한다.
- 5) 출생·사망은 응답자가 응답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실사에 임하기 전에 이장·반장 보건요원 및 가족계획요원 등으로부터 사전정보를 수집하면 조사에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다. 면접요령

인구동태표본조사는 조사성질상 응답자가 응답을

기피하거나 기억이 흐려질 우려등 여러가지 난점이 있으므로 조사원은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실사에 임해야 한다.

이중에서도 전염병 사망이나 유아사망등에 관하여는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응답자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마음의 상처를 되새기게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실사시유의 사항

- 1) 조사원은 조사표 기입요령을 충분히 익혀 조사에 임해야 한다.
- 2)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응답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 3) 조사원은 조사표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의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질문시에는 조사표상의 항목순서대로 질문함으로써 질문 누락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4) 출생년월일은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상의 출생년월일을 기입하며 음력으로 응답할 경우는 "양: 음력환산표"에 의거하여 반드시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 5) 조사원은 반드시 규정된 조사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조사가일전이나 기일이 지난후에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3. 조사표의 검토 정리 및 제출

가. 조사가 끝나면 조사표상의 오기, 누락등이 없는가를 검토한 후 불비한 점이 있을 때는 즉시 재조사를 해야 한다.

나. 조사표가 완전히 검토 정리되면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표를 제출한다.

다. 불완전조사의 재조사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는 지도원이 재검토하여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재조사를 지시할 것이므로 조사원은 이러한 재조사를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전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라. 조사표류 제출

- 1) 가구원 명부 (전임가구 또는 누락가구분) : 중앙 및 보조지도원에 각 1매 제출, 조사원 1매 보유
- 2) 종합표 : 중앙 및 보조지도원에 각 1매 제출
- 3) 표본조사표 : 중앙 및 보조지도원 각 1매 제출
- 4) 변동보고서 : 1매 통계국에 제출

마. 제출기일

매분기마다 지정된 달의 25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8일까지 조사표류를 검토 정리한다. 검토 정리가
 끝나면 29일까지 보조지도원에게 이를 제출하
 며 보조지도원은 익월 4일까지 통계국에 제출한다.

四. 조사표류기입요령

1. 조사표의 종류

가. 조사구별 종합표(2매 작성)

조사구별 종합표는 조사구내의 가구구성과 조사대상을 한표에 기입함으로써 조사에 도움을 주고 잠정집계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매분기 조사시에 종합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타조사표류와 함께 통계국에 송부하고 1매는 보조지도원이 보관하여 다음 조사시에 참고토록 한다.

나. 가구원명부 및 조사구요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원 명부와 조사구요도를 사용하며 보완요령도 같다.

다. 표본조사표(2매작성)

출생·사망·이동의 인구동태를 조사하는 조사표이다. 매분기 조사시에 조사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통계국에 송부하고 1매는 보조지도원이 보관하여 다음 조사에 참고토록 한다.

2.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가구원명부 보완

가구원명부보완요령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와

같다.

나. 표본조사표 기입요령

인구동태표본조사표의 정확한 조사기입이 본조사의 성패여부를 좌우하므로 형식적인 질문이나 기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동조사는 매분기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기의 조사가 정확하게 실시되었다면 해당분기의 출생·사망·이동만 조사하면 될 것이지만, 가구원 명부 보완시 또는 조사당시에 응답자의 기피 또는 실수에 의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누락된 출생·사망·이동에 대하여는 조사대상기간(3개월)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1) 출생란

출생은 출생의 정의에 따르되, 아기의 출생 신고여부 또는 출생후 사망과는 관계없이 일단 출생한 아기는 모두 조사하여야만 한다.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조사대상 가구내에서 상주하는 조사대상가구원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출타한 사람과 함께 일시적으로 출타한 아기도 포함한다. 이와 반대경우의 아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1) 번호 : 기입순서에 따른 번호이다. 한조사표에 3건의 출생밖에 기입하지 못하므로 2매의 조사표가 필요한 경우는 두번째의 조사표에는 4, 5, 6으로 기입한다.

(2) 가구번호

가구번호는 태어난 아이가 소속하는 가구의 가구원명부에 있는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가구번호는 통계국에서 가구원명부를 보완하고 대조조사에 필요한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3) 가구주 이름

태어난 아이가 소속하는 가구의 가구원명부상의 가구주 이름을 기입한다.

(4) 출생아 이름

출생아의 이름을 기입한다.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애기"로 기입하여 보고하되 가구원 명부상에는 후에 정식이름이 생겼을 때에 정정한다.

예 : 김 애 기

(5) 성 별

출생아의 남녀 성별에 따라 해당된
란에 0 표시를 한다.

예 : 1 . 남
2 . 여

(6) 출생년월일

호적과는 관계없이 태어난 아기의 실
제 출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음력으로 대답하는 경우는 " 연도별
양·음력환산표" 에 의거 반드시 양력
으로 환산해서 기입해야 한다.

(7) 모의 생년월일

호적과 관계없이 아기를 출산한 어머
니의 실제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기입
한다. 다만 출생아와 어머니의 생년
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신고일자와 동일토록 한다.

(8) 출생당시의 모의 나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때의 실제 나
이를 만세로 환산 기입한다.

물어서 기입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
므로 조사원이 직접 다음과 같이 환

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ast \text{ 출생아 생년월일} - \text{모의 생년월일}$$

(6) 번 (7) 번

$$= \text{출생당시 모의 나이}$$

예시 1. 출생아의 출생월이 모의 출생월 보다 늦는 경우

이 경우는 출생아의 출생년도에서 모의 출생년도를 빼면 모의 만세 연령이 된다.

$$\ast \text{ (출생아생년월일)} - \text{(모의생년월일)}$$

1972.5.20 1940.4.5

$$= \text{(모의 나이)}$$

32 세

예시 2. 출생아의 출생월이 모의 출생월보다 빠른 경우

이 경우는 출생아의 출생년도에서 모의 출생년도를 뺀 나이에서 다시 1세를 빼야 모의 만세 연령이 된다.

$$\ast \text{ (출생아생년월일)} - \text{(모의 생년월일)}$$

1972.3.31 1940.4.5

$$= \text{(출생당시 모의 나이)}$$

31 세

예시 3. 출생아와 모의 출생일이 같고 출생
일자가 다른 경우

이 경우는 첫째 : 출생아의 출생일자가 모의 출생일자보다 늦는 경우는 예시 1 과 같이 환산하고

$$* \quad \begin{array}{r} \text{(출생아 생년월일)} - \text{(모의 생년월일)} \\ 1972.8.15 \quad \quad \quad 1940.8.10 \\ \hline = \text{(모의 나이)} \\ 32 \text{ 세} \end{array}$$

둘째 : 출생아의 출생일자가 모의 출생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예시 2 와 같이 환산한다.

$$* \quad \begin{array}{r} \text{(출생아 생년월일)} - \text{(모의 생년월일)} \\ 1972.9.5 \quad \quad \quad 1940.9.24 \\ \hline = \text{(모의 나이)} \\ 31 \text{ 세} \end{array}$$

(9) 조산자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할 때 출산을 도와준 사람을 의미한다. 산부인과 의사 또는 일반 의사의 조력으로 출산한 경우는 " 1. 의 사" 란에 , 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조력을 받은 때

는 " 2. 조산원" 란에, 혼자 또는 친척의
조력을 받고 출산한 경우에는 " 3. 기타"
란에 0 표시를 한다.

예: 1. 의 사

2. 조산원

3. 기 타

(10) 모의 교육정도

(11) 부의 교육정도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최종출신
학교의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0 표시한다.

중퇴인 경우에도 동일교육기관의 해당란에
0 표 한다.

구제중학은 고등학교에, 전문학교는 대학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예: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이상

(12) 부의 직업

가구원 명부상의 직업의 개념에 따라 출생
한 아기의 아버지의 직업을 기입한다.

(13) 출생신고 여부

아기가 출생 후 조사당시 까지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물어서 해당란에 0 표를 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년월일과 신고처를 물어서 기입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년월일과 신고처는 당연히 기입하지 않는다.

예 : 1. 했 음
2. 안했음

(14) 신고년월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연도와 월까지만 기입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에 신고한 일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15) 신고처

출생신고(호적신고)를 한 장소를 말하며 본적지에 신고한 경우에는 본적지의 신고행정관서를, 현주지에서 호적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주지의 신고행정관서를 기입한다.

예 : 서울 성북구
경남 합천군 삼가면

2) 사망란

본 표본조사의 성공, 실패여부는 사망이 정확

하게 포착되느냐 못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조사원은 사망자 조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망은 대상가구내에서 조사대상기간내에 죽은 사람을 전부 포함한다. 사망은 자칫하면 누락하기 쉽고 응답기피도 많이 나타나므로 응답자를 적절히 유도하여 조사누락이 절대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출생후 사망한 어린이(유아사망)는 출생과 사망 모두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의 사전정보(읍면사무소, 보건소, 이장 또는 통반장)를 얻어 신중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멸도 가끔 볼 수 있는 조사누락요인이므로, 조사대상지역 주민과 긴밀히 접촉하여 정보를 얻도록 한다.

전입가구에 대하여는 전입전 거주지에서 조사대상기간내에 가구원중 사망자가 없는가 신중히 파악토록 하며, 악성병(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응답기피도 상당히 많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번호

출생란의 번호기입요령과 같다.

- (2) 가구번호
 사망자의 가구원명부상의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가구번호는 통계국에서 가구원명부를 보완하고 대조조사에 필요한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 (3) 가구주 이름
 사망자의 가구원 명부상 가구주이름을 기입한다.
- (4) 사망자 이름
- (5) 성 별
 사망자의 남녀 성별에 따라 해당란에 0 표시를 한다.
 출생란의 성별 표시요령과 같다.
- (6) 사망년월일
 호적에 신고한 일자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사망한 일자를 양력으로 기입한다. 음력으로 대답하는 경우는 "연도별 양·음력 환산표"에 의거 반드시 양력으로 환산해서 기입해야 한다.
- (7) 사망자의 생년월일
 사망자의 실제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기입한다.

다. 음력으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양력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8) 사망당시의 나이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실제 나이를 만세로 환산 기입한다. 만세환산은 조사원이 직접 하여야 하며 환산방법은 출생란의 "8. 출생당시 어머니의 나이" 환산 방법과 같다.

예 1. (사망년월일) (사망자의 생년월일)
1972.4.5 - 1948.3.4
(사망자의 나이)
= 24 세

예 2 . 1972.4.5 - 1948.5.30
= 23 세

(9) 사망전 직업

사망자가 사망직전까지 종사하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사망자의 직업에 변동이 심할 때는 일생 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입한다.

14 세 미만인 자는 사선(\)을 치고 학생은 학생, 군인은 군인으로 기입한다.

(10) 사망자의 교육정도

사망자가 사망전까지 수료, 졸업 또는 재학 하였던 학교의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0 포

시한다.

예 : 1. 미취학

2. 국민교

3. 중교교

4. 대학이상

6세 미만인 자의 사망은 이 난에 (\) 을
친다.

(ii) 사망원인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질병명
(예 : 결핵 · 심장마비 · 뇌염 · 간질병 등) 사고
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원인 (예 : 버스사고 ·
연탄사고 , 화재 , 연탄중독등) , 타살인 경우는
타살방법 자살인 경우는 자살방법등에 대하
여 상세히 기록한다.

(12) 사망진단자

사망자의 사망을 최종적으로 진단 확인한
사람이 의사면 " 1. 의사 " 란에 , 한의사인
경우는 " 2. 한의사 " 란에 , 기타 (가족 , 친지
또는 이장 등 동리유지) 인 경우는
" 3. 기타 " 란에 0 표시 한다.

예 : 1. 의 사

2. 한의사

3. 기타

- (13) 사망신고 } 여부
- (14) 신고년월 } } 기업요령은 출생에 있어서와 같다.
- (15) 신고처 } } 여기서의 신고라 함은 호적에 사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화장신고는, 호적상의 사망신고가 아니므로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동란

이동은 조사대상개념에 따라 기입하되 전입에 한하여 조사한다.

따라서 가구원 명부상 전출한 가구원이 있어도 본조사표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다. 전입을 조사할 때는 조사구내의 어느 가구의 가구원으로 개개인의 전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구전체가 조사구내에 전입할 경우에도 조사하며, 전입자는 개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구전체가 전입할 경우에는 전입가구의 가구원 전원을 일일이 조사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또, 가구원중 조사대상기간내에 전입하여 조사 실시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과 이동이 모두 누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누락

이 없도록 신중히 조사해야 한다.

- (1) 번호 : 출생란의 번호 기입요령과 같다.
- (2) 가구번호
전입자의 가구원 명부상의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 (3) 가구주 이름
전입자의 가구원 명부상의 가구주를 기입한다.
- (4) 전입자 이름 : 전입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 (5) 성 별
전입자의 성별에 따라 해당란에 0 표시한다.

예 : 1. 남

2. 여

- (6) 전입자의 생년월일
전입자의 실제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기입한다. 음력으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양·음력 환산표"에 의거 반드시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입해야 한다.
- (7) 전입년월일
전입자의 실제 전입일자를 양력으로 기입하고, 주민등록에 기재된 전입일자를 기준

으로 해서 는 안 된다.

(8) 전입당시의 나이

전입한 사람의 전입당시의 실제 나이를 만세로 기입한다. 응답자에게 물으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세환산은 조사원이 직접 하여야 하며 환산방법은 출생란의 " 8. 출생당시 어머니의 나이" 환산방법과 같다.

예 1 : (전입년월일) (전입자의 생년월일)
1972.8.25 - 1950.7.20
(전입자 나이)
= 22 세

예 2 : 1972.9.20 - 1950.10.25
= 21 세

(9) 전입전 거주지

전입이전에 살던 장소를 동·읍·면까지 기입하여야 한다.

전입자중 군 교도소로부터 전입한 경우는 군부대나 교도소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예 : 경북 영주군 영주읍

(10) 출생지

전입자의 실제 출생지를 구, 시, 군까지 기입한다. 따라서 실제 출생지는 호적에 신교하는 본적지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도 있다.

(11) 직 업

전입자의 직업을 가구원 명부상의 직업개념에 따라 기입한다. 14 세미만인자는 사선(\)을 치고 학생은 학생, 군인은 군인으로 기입한다.

(12) 이동사유

전입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즉 구직, 학업관계, 직장이동, 가족과의 합류, 혼인, 군에서 제대, 요양, 기타 이동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다. 조사구별 종합표 기입요령

1) 란외 사항

- (1) 작성년월일 : 매분기 조사시 작성하는 종합표를 실제 작성한 일자를 기입한다.
- (2) 행정구역 : 행정구역은 정확하고 공식적인 행정구역 명칭을 기입한다.
- (3) 조사구 번호 : 담당조사구의 번호를 기입한다.
- (4) 매수 : 1매의 종합표는 연속적으로 가구까지 기입할 수 있으므로 담당조사구 내의 대상 조사가가 40가구 미만일 경우는 1매, 40가구 이상 8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2매,

30가구이상 12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3매를 사용하여 종합표 작성을 완료하고 순서에 따라 몇매중 몇매째인가를 기입한다.

예 : 총 3매중 2째번 종합표 → 3매중
2매

(5) 조사원 및 지도원 이름 : 해당조사구의 조사를 담당 한 조사원과 지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란내사항

(1) 가구번호 : 가구원 명부상 가구명부를 기입한다.

(2) 가구주이름 : 가구원 명부에 가구주로 기록된 동인으로 실제상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기입한다.

(3) 가구소재지 : 가구원 명부상 주소를 기입한다.

(4) 가구원수 : 조사당시 가구내의 조사대상 가구의 남·여 및 총수를 기입한다.

(5) 출생 : 조사대상 가구내에서 조사대상 기간내에 출생한 사람을 기입하며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출생이 없는 가구는 사선(\)

(6) 사망 : 조사대상 가구내에서 조사대상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을 기입하며 가구원수에서 제외된다. 사망이 없으면 사선을 친다.

(\)

(7) 전입 : 조사대상기간내에 표본지역 또는 가구내에 상주 또는 3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한 가구 또는 사람의 수를 기입하며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전입이 없으면 사선 (\) 을 친다.

라. 변동보고서 기입요령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변동보고서 기입요령과 같다.

변동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표와 함께, 인구동태표본조사시에는 인구동태표본조사표류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부

록

변동보고서			① 월	② 조사구		전 원		증 가	감 소	금 월	
			가구원 명부 확인			가 구		⑥	⑦	⑧	⑨
			③ 조사원	④ 지도원	⑤ 담당	인 구		⑩	⑪	⑫	⑬

가구번호	가구원 번호	이 름	가 구 주 와의 관계	성 별	⑯ 생년월일			배 우 관 계	학 령	⑰ 변 동		구 분
					년	월	일			월	일	

가구번호	가구원 번호	이름	가구주 와의관계	성 별	생년월일			배우 관계	학 력	변 동		구 분
					년	월	일			월	일	

㉔ 참고 : 산축건물 (거처) 의 주소 및 약도 , 가구원 명부 수정내용 , 기타 보고사항

조사원

조사원 (인)

1. 출생 지남 분기조사 이후 출생이 있으면 기입하고 지난 조사시 누락된 출생도 발견되면 기입하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번호	가구번호	가구주이름	출생이름	성별	출생년월일	모의생년월일	출생장소 모의나이	조산자	의외 교육정도	학 교 정 도	부 의 직 업	혼 신 교 여 부	신 교 년 월	신 교 처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1. 의사 2. 조산원 3. 기타	1. 미국취미학교 2. 중등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이상	1. 미국취미학교 2. 중등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이상		1. 했다 2. 안했다	19년월	시구출생 시구읍면

2. 사망 지남 분기조사 이후 사망이 있으면 기입하고 지난 조사시 누락된 사망도 발견되면 기입하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번호	가구번호	가구주이름	사망자이름	사망자 성별	사망년월일	사망자의 생년월일	사망 장소	사망직업	사망자의 교육정도	사망원인	사망진단자	혼 신 교 여 부	신 교 년 월	신 교 처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1. 미취미학교 2. 중등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이상 5. 대학이상		1. 의사 2. 한의사 3. 기타	1. 했다 2. 안했다	19년월	시구출생 시구읍면

3. 이 동 지남 분기조사 이후 이동이 있으면 기입하고 지난 조사시 누락된 이동도 발견되면 기입하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번호	가구번호	가구주이름	전입자이름	성별	전입년월일	전입년월일	전입 장소	전입직업	거주지	출 생 지	이 동 사 유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구읍면	시구	

(지정통계 제3호)
 인구동태표본조사

조사구별종합표

작성년월일 19 年 월 일

행정구역				조사구번호	매수		조사원 이름						
시	군	읍면	가리동		매	배	인						
도	군	면	동		매	배	인						
① 가구 번호	② 가주주이름	③ 가구의 소재	④ 가구원수			⑤ 출생		⑥ 사망		⑦ 전입		⑧ 전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총 계													